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.  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6. 10. 7. / 장 상 기 의원 외 18명

나. 회 부 일 자 : 2016. 10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 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6. 10. 18.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 동 협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강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,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-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“월 2,424,990원”에서 “월 2,461,360원” 으로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

나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관련법령 :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#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이수연)

- 본 조례안은 2017년도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 및 활동의 전문성, 청렴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 (지방자치법 제33조)
- 전체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연 1,32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,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17년도 월정수당을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율의 50%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는 것으로, 2017년의 경우 2016년 대비 연간 436,440원 인상되어, 총 의정비를 연 42,736,320원으로 정하는 것이며, 2016년도 연 42,299,880원 대비 약 1.03% 인상되는 효과임.

#### 5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